

1. 개정이유

2024. 3. 22. 국제해사기구(IMO)는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박평형수관리협약 개정안을 채택하였고, 이 협약 개정안은 2025. 10. 1.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었음

이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한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이 2026. 7. 1.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전자기록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수기 기록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함

2. 주요내용

전자기록부 과태료 명확화(별표 3 개정)

법령에서 위임한 전자기록부를 사용하는 선박소유자가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선내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예정(∼4월)

대통령령 제 호

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8조제1항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1. 삭제 <2019. 6. 18.>		
2.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2호	50만원
3.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비치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3호	30만원
4.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비치·기록·보존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4호	30만원
4의2. 법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4호의 2	30만원
5.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5호	50만원
6.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6호	30만원
6의2.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6호의 2	200만원
6의3.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6호의 3	200만원
7.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7호	200만원
8.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8호	50만원
9.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9호	100만원
9의2.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9호의2	50만원
10.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·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10호	200만원
11.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아 외국 항에서 출항정지를 받은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11호	200만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[별표 3] 과태료의 부과기준			[별표 3] 과태료의 부과기준		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1. 삭제 <2019. 6. 18.>			1. 삭제 <2019. 6. 18.>		
2.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2호	50만원	2.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2호	50만원
3.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비치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3호	30만원	3.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비치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3호	30만원
4.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비치·기록·보존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4호	30만원	4.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비치·기록·보존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4호	30만원
<4의2 신설>			4의2. 법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4호의2	30만원
5.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5호	50만원	5.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5호	50만원
6.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6호	30만원	6.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증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6호	30만원
6의2.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6호의2	200만원	6의2.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6호의2	200만원
6의3.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6호의3	200만원	6의3.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6호의3	200만원
7.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7호	200만원	7.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7호	200만원
8.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8호	50만원	8.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8호	50만원

9.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9호	100만원
9의2.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9호의2	50만원
10.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·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10호	200만원
11.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아 외국 항에서 출항 정지를 받은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11호	200만원

9.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수거확인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9호	100만원
9의2.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무를 위반한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9호의2	50만원
10.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·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10호	200만원
11.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아 외국 항에서 출항 정지를 받은 경우	법 제46조 제1항제11호	200만원